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785
------------	------

2021.12.2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1. 10. 14. 박순규 의원 발의 (2021. 10. 20. 회부)

2. 제안이유

- 청계천 등 하천을 중심으로 야간 빗축제가 매년 시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 열리고 있고 자치구 하천에서도 빗축제가 시민들의 여가를 위하여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빛은 공해적인 측면에서는 관리되어야 하는 반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빗축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서울시 조명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이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빗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의2)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빛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에너지 절감 등 지원기준을 정하여 이에 부합한 빛축제에 시 예산을 지원 가능케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p><u>제26조의2(빛축제 지원) ① 시장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빛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 빛축제를 비롯해 서울시의 각종 축제는 관련 법규와¹⁾ 관련 사업에²⁾ 따라 문화본부에서(문화예술과) 예산을 주로 지원해주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에너지절감형 빛축제 등 정책목표를 반영한 빛축제 유도 및 이에 따른 조명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빛축제

1)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축제의 지원·육성)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2)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을 통해 자치구의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평균 50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민간 축제의 경우에도 ‘민간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을 통해 33억원(‘21년 기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빛축제는 민간 개최가 없어 포함되지 않음

예산 지원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서울시의 빛축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2건(DDP 서울라이트, 빛초롱축제), 자치구 9건으로 총 11건이 개최되고 있고, 자치구 빛축제 9건 중 6건이 시비를 지원받고 있음(붙임1).

대부분, 시민 여가생활 지원과 원활한 행사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재정 지원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인 빛축제의 정책성과 산업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빛축제의 정책적·산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탄소중립 실천력이 중요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절감형 빛축제는 친환경 조명·기술 발전을 독려하는 의미도 클 것으로 보아, 에너지절감형 빛축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 조례에서(제26조(조명지원사업)) 에너지절감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빛축제 지원의 가지조문을 신설하기 보다는, 관련 규정의 지원 대상에 빛축제를 추가하는 것이 입법 취지 및 형식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6조(조명지원사업)	제26조(조명지원사업)	제26조(에너지 절감을 위한 조명 등의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① (현행과 같음)	① -----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개선·정비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개선·정비하는 경우
2. 「경관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경관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빛축제 지원)
(생략)

- 개선·정비하거나 에너지 절감형 빛축제를 개최하는 자에게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고효율·녹색인증 조명등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빛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또한, 이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국에서 빛축제 지원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서울시 축제의 통합적 관리와 예산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서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 축제를 총괄하는 문화본부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교부토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정희
연락처	02-2180-8206
이메일	rienrien@seoul.go.kr

<붙임 1> 서울시 빛축제 관련 (자료: 도시빛정책과)

기관명 (부서명)	행사명	행사개요	규모(천원)	비고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서울 빛초롱축제	- 시기 : 매년 4분기 (21.11.5.~ 21.11.21.) - 행사내용 : 한지등을 주축으로 다양한 빛 조형물 전시	672,440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서울라이트	- 시기 : 21.3.26.~21.4.1. - 행사내용 : DDP를 초대형 스크린 으로 하여 미디어파사드 표출	472,000	
종구 (문화관광과)	명동 빛 축제	- 시기 : 매년 4분기 (21.11.15.~ 22.1.14.) - 행사내용 : 가로수 LED조명 설치, 트리 및 포토존 설치	60,000 (구비) 60,000 (시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광진구 (문화체육과)	오색별빛 광장	- 시기 : 21. 12월 중 - 행사내용 : 빛조형물 설치 및 점 등식(또는 퍼포먼스) 행사 진행	320,000 (구비) 30,000 (시비)	서울시 문화예술과 (마을축제)
도봉구 (문화관광과)	도봉천 등축제	- 시기 : 매년 10월 (6일간) - 행사내용 : 등 및 빛 조형물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150,000 (구비) 200,000 (시비)	서울시 문화예술과 (브랜드축제)
도봉구 (문화관광과)	우이천 등축제	- 시기 : 매년 5월 (6일간) - 행사내용 : 등 및 빛 조형물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96,000 (구비)	
노원구 (문화체육과)	노원달빛산책	- 시기 : 21.10.20.~21.11.7. - 행사내용 : 현대 미술 작품을 포 함한 한지등 150여점 전시	190,000 (구비) 40,000 (시비)	서울시 문화예술과 (마을축제)
마포구 (관광과)	홍대 거리 빛거리 조성	- 시기 : 매년 4분기(21.12. ~ 22.2.) - 행사내용 : 홍대 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빛조형물(포토존) 조성	100,000 (구비)	
송파구 (문화체육과)	제21회 한성백제문화제 대백제 빛축제	- 시기 : 21.10.06.~ 21.10.20. - 행사내용 : 백제 역사 및 유물 관련 빛 조형물 설치	299,000 (구비) 200,000 (시비)	서울시 문화예술과 (브랜드축제)
강동구 (문화예술과)	야간 빛축제 (선사빛거리)	- 시기 : 매년 10월 선사문화축제 기간 - 행사내용: 선사시대 주제의 조형물 및 한지등을 활용한 빛거리 조성	98,724 (구비)	
강동구 (문화예술과)	강동다리축제 빛의갤러리 (2020,2021)	- 시기 : 2021. 11. 28.(일) - 행사내용: 다리 위 야간경관 및 문화 공간 조성(루미나리에 빛 조명 활용)	230,000 (시비)	서울시 보행정책과 지원

<붙임 2>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빛축제"란 전구, 전등 또는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아름답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축제를 말한다.

제6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명환경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 및 공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조명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개선·정비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개선·정비하는 경우
 2. 「경관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의 형성·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경관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야간경관을 형성·정비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